

[이기대공원 친환경조전망대 조성사업] 설계공모 질의답변

1	“S” 건축사사무소
【질의내용】 ○ [조감도 및 투시도 작성 기준 관련] 지침서 <9쪽 나.설계설명서>의 작성기준과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2) 전체 매수는 총 15쪽 이내로 작성한다 3) 도면의 종류 중 “조감도 또는 투시도(실내포함) 5컷 이내”로 작성한다. 7) “조감도 또는 투시도는 각 도면당 설계설명서 한 페이지 전면을 사용하며, 표현기법은 「렌더링 제한기준」의 범위 내에서 3차원 이미지로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 이에 조감도 및 투시도의 작성 기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질의드립니다 “조감도 또는 투시도(실내포함) 5컷 이내”에서 1컷을 1개의 도면으로 보아, 1컷당 설계설명서 1페이지 전면을 사용해야 하는지? 위와 같이 해석할 경우, 조감도 및 투시도를 총 5컷 작성한다면 설계설명서 전체 15쪽 중 5쪽을 조감도 및 투시도에 사용하게 되는 것이 맞는지? 또는 한 페이지에 조감도 또는 투시도 이미지를 2컷 이상 함께 배치하는 것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 지침서 ‘3. 제출도서 및 작성요령’에서 명시한대로 ‘조감도 또는 투시도는 각 도면당 설계설명서 한 페이지 전면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한 페이지에 2컷 이상 함께 배치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질의내용】

- 이기대공원 조성계획상 산책로의 사업지 연계 및 변경 범위
「이기대공원 조성계획도(예정)」에서는 기존 산책로의 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산책로를 반드시 사업지 내부로 유입하여 건축계획과 연계하여야 하는 것인지, 또는 설계개념 및 동선계획상 사업지와 직접 연계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 산책로를 사업지 외부에서 정리·연결하는 것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기대공원 조성계획도(예정)」에 표시된 산책로의 위치 및 선형을 사업지 내부 및 외부에서 설계자의 의도에 따라 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변경이 가능한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 미개설 산책로(40번)는 설계자의 의도에 따라 실사용대지 및 그 외 공원의 범위까지 삭제, 이동 또는 선형변경이 가능합니다.

【질의내 용】

○ 갈맷길 동선 유지 및 조정 가능 범위

지침에는 갈맷길의 동선을 유지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이기대공원 현황평면도」와 「이기대공원 조성계획도(예정)」상 갈맷길의 위치 및 선형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갈맷길의 경우 기존 현황평면도상의 동선을 원칙적으로 유지하여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공원 조성계획 및 사업지의 설계개념을 고려하여 기존 동선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선형 변경 또는 폭원 조정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이기대공원 조성계획도(예정)」의 내용을 수용하여 갈맷길의 위치를 조정하는 것도 가능한지, 가능한 경우 그 허용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 갈맷길이 동선은 위치, 선형 및 폭원 변경이 불가하나, 설계자의 의도에 따라 실사용대지 내의 산책로 등을 통한 갈맷길과의 보행 동선 연결은 가능합니다.

【질의내용】

- 주차장 접근을 위한 황토길 및 접근도로의 조정 가능 범위
지침에는 주차장 접근을 위해 기존 황토길을 활용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재 황토길의 폭이 약 1.5m로 확인되어 차량 통행을 위한 접근도로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폭원 확보 및 일부 선형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주차장 접근도로의 폭원 및 선형을 차량 통행에 적합하도록 설계자가 계획할 수 있는지, 가능하다면 최소 또는 권장 폭원 등 별도의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기대공원 조성계획도(예정)상의 산책로가 기존 황토길 영역과 일부 중첩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산책로의 변경이 사업지 내부에서만 가능하다면 주차장 접근동선 및 건축계획과의 충돌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산책로의 변경 가능 범위가 사업지 외부의 공원구역까지 포함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산책로와 주차장 접근도로가 상충하는 경우, 산책로의 선형 및 위치 조정과 접근도로의 폭원·선형 조정이 각각 어느 범위까지 가능한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 차량 통행은 기존 황토길을 접근하며, 추후 폭원 4M의 진입도로를 개설할 예정이므로 이를 감안하여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 미개설 산책로(40번)는 설계자의 의도에 따라 실사용대지 및 그 외 공원의 범위까지 삭제, 이동 또는 선형변경이 가능합니다.

5

“S” 건축사사무소

【질의내용】

- 공사비 초과범위에 대한 계획 제안 가능 여부
건축물과 연계하여 전망을 위한 공작물 또는 조경시설로서 전망
파고라를 제안사항으로 계획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내용】

- 예정공사비를 초과한 전망을 위한 공작물 또는 전망파고라 등에
대한 계획제안은 불가하며, 실사용대지 내 조경(공작물 등 포함)
공사비를 포함하여 계획하여야 합니다.

6

“D” 건축사사무소

【질의내용】

- 공모지침서 24P. / 1.3 주요 시설개요 및 면적
1. 목조 체험장 및 다목적 프로그램실은 ‘타용도 제안가능’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설계자의 계획 의도에 따라 새로운 프로그램
으로 변경하여 제안할 수 있는지, 또한 사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전망타워 등 전망 기능을 강화한 프로그램으로 제안하는 것도
가능한지 질의드립니다.

【답변내용】

- 주요 시설 중 타용도 제안가능 시설은 설계자의 의도에 따라 새로운
프로그램 시설로 제안가능하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등 관계법령에
적법한 용도에 한하여 제안가능합니다.

7

“D” 건축사사무소

【질의내용】

- 설계자의 계획 의도 및 대지의 고저차를 고려하여 지하층을 계획하는 것이 가능한지 질의드립니다.

【답변내용】

- 지하층 계획 가능합니다.

8

“D” 건축사사무소

【질의내용】

- 공모지침서 25P. / 2.1 설계지침 일반 / 가. 일반사항 1)
사업명에 ‘목조전망대’가 명시되어 있으나, 시설 면적표에는 별도의 전망대 면적이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전망대를 독립된 타워 형태로 계획해야 하는지, 건축물의 테라스·옥상 등과 연계한 전망공간으로 봐야 하는지, 또는 별도의 면적 산정이 없는 타워 형태로 제안해야 하는지 등 전망대의 구체적인 계획 방식이 설계자의 자유로운 제안사항인지 질의드립니다

【답변내용】

- 설계공모지침서의 설계지침에 따라 인접 아파트와의 시각적 간섭을 최소화하고, 건축물의 위치 및 높이 계획을 통해 프라이버시를 확보하여야 하므로, 이를 감안하여 건축물의 배치, 실내공간의 배치·구성, 테라스 및 옥상 등을 활용한 전망공간을 구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 공모지침서 25P. / 2.1 설계지침 일반 / 가. 일반사항 2)
지침서에서 목구조 적용 비율을 주요구조부(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 등)의 50% 이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때 해당 비율은 엘리베이터, 기초, 코어 등을 제외한 주요 구조부를 기준으로 산정하는지, 아니면 이를 포함한 전체 주요 구조부를 기준으로 산정하는지 질의드립니다.

【답변내용】

- 주요구조부의 기준은 「건축법」 제2조 제1항 7호에 따르며, 주요 구조부의 50%에 대한 기준은 체적(m^3)으로 판단합니다.

10

“D” 건축사사무소

【질의내용】

- 공모지침서 26P. / 2.1 설계지침 일반 / 가. 일반사항 10)
“기 수립된 이기대공원 조성계획 상의 미개설 산책로 선형은 변경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산책로 40번은 선형 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대지 내에 필수적으로 계획하여야 하는지 질의드립니다.
- 공모지침서 26P. / 2.1 설계지침 일반 / 나. 배치·동선 계획 1)
6. 곡선형으로 조성된 대상지 남측의 길(이기대 자연마당)에서 자유롭게 보행 접근이 가능한지 질의드립니다.

【답변내용】

- 미개설 산책로(40번)는 설계자의 의도에 따라 실사용대지 및 그 외 공원의 범위까지 삭제, 이동 또는 선형변경이 가능합니다.
- 보행 접근 가능합니다

11

“D” 건축사사무소

【질의내용】

- 공모지침서 32P. / 3-2. 별도 제공자료
본 사업과 관련하여 수행된 기획설계 자료 및 관련 보고서의 제공 여부를 질의드립니다

【답변내용】

- 건축기획용역 자료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질의내용】

- 건축물 높이제한(표고 81m 이하) 적용 기준
표고 81m 이하'는 건축물의 최고높이(지붕 및 파라펫 등 포함)를 절대표고 EL.81.00m 이하로 계획하는 것을 의미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내용】

- 제출안은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를 기준으로 표고 81.00m 이하가 되도록 계획하여야 합니다. (건축법에서 높이에 산입하지 않는 부분은 제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침에 따라 인접 아파트와의 시각적 간섭을 최소화하고, 건축물의 위치 및 높이 계획을 통해 프라이버시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13

“C” 건축사사무소

【질의내용】

- 건축물 높이제한(표고 81m 이하) 적용 기준
난간, 승강기탑, 계단탑, 장식탑 등 관계 법령상 건축물 높이 산정에서 제외되는 구조물의 경우에도 표고 81m 이하의 제한이 적용되는지, 또는 높이에 산입되지 않는 구조물은 EL.81.00m를 초과하여 계획할 수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내용】

- 제출안은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를 기준으로 표고 81.00m 이하가 되도록 계획하여야 합니다. (건축법에서 높이에 산입하지 않는 부분은 제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침에 따라 인접 아파트와의 시각적 간섭을 최소화하고, 건축물의 위치 및 높이 계획을 통해 프라이버시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14

“C” 건축사사무소

【질의내용】

- 건축물 높이제한(표고 81m 이하) 적용 기준
대상지 상부 산책로와 건축물을 연계하여 계획할 경우 일부 건축물의 표고가 EL.81.00m를 초과할 수 있는바, 건축계획상 필요한 경우 높이제한의 완화가 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내용】

- 별도의 높이제한 완화는 불가합니다.
- 제출안은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를 기준으로 표고 81.00m 이하가 되도록 계획하여야 합니다. (건축법에서 높이에 산입하지 않는 부분은 제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침에 따라 인접 아파트와의 시각적 간섭을 최소화하고, 건축물의 위치 및 높이 계획을 통해 프라이버시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15

“C” 건축사사무소

【질의내용】

○ 대상지 차량 진·출입 동선

대상지 현황 및 설계지침에는 차량 동선은 대상지 서측 황토길을 이용하도록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대상지 상부의 산책로를 통한 접근도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장애인 차량 및 관리차량 등 대상지 내 차량의 진·출입 동선을 서측 황토길이 아닌 대상지 상부 산책로를 활용하여 계획하는 것이 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내용】

○ 사업 대상지 내 차량의 진·출입은 지정된 차량동선을 이용하여 계획하여야 합니다.

16

“I” 건축사사무소

【질의내용】

○ 현상설계질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문화 및 집회시설은 반드시 그룹지어서 연결시켜야하나? 아니면 층별로 따로 섞어 조닝하는 것도 허용되는지?

【답변내용】

○ 건축물의 용도별로 그룹지어 계획할 필요는 없습니다.

○ 설계자의 계획의도에 따라 주요 시설별(기념품샵, 안내 및 관리실 등) 요구면적(±5%)을 확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조닝 가능합니다.

17

“I” 건축사사무소

【질의내용】

- 현상설계질의
기계실의 설계요구사항
ex) 최소 요구 층고? 출입이 반층정도 올라가서 해도 되는지?
아니면 외부에서 별도로 출입해도 되는지?

【답변내용】

- 기계실에 관한 최소 요구 층고 및 출입에 대한 요구사항은 없으나, 설비공간은 유지관리 및 점검이 용이하고, 침수, 누수 및 동파 등 위험요소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합니다.

18

“I” 건축사사무소

【질의내용】

- 현상설계질의
배수 방향?/집수정 위치/공공하수 및 전기연결 여부? 계획대지
침수위험이 있는가?

【답변내용】

- 배수 등은 현재 자연배수이므로, 실사용 대지 내 집수정 등은 별도로 있지 않고, 상하도 및 전기설비는 인입되어 있지 않으며, 추후 별도 공사예정입니다.
- 아울러 실사용 대지는 침수위험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19

“I” 건축사사무소

【질의내용】

○ 현상설계질의

기념품점은 사무실과 별도 운영인가? 공간적으로 분리 아니면 같은 곳?
각실의 면적규정의 오차허용범위는?

【답변내용】

- 기념품샵은 안내 및 관리실과 분리된 별도의 공간이며, 각 주요 시설별 $\pm 5\%$ 이내 조정 가능합니다.

20

“I” 건축사사무소

【질의내용】

○ 현상설계질의

전시장 인테리어 비용도 본계획안 예산에 포함인가? 그렇다면
책정금액이 있나?

【답변내용】

- 예정공사비에 모든 주요시설의 인테리어 비용은 포함되지 않으나,
주요시설에 대한 인테리어 계획(안) 제안은 가능합니다.

21	“I” 건축사사무소
【질의내용】 ○ 현상설계질의 필요시 대지앞 접근로를 일부 변경제안 하는것도 가능한가? 【답변내용】 ○ 차량 진출입로는 변경 불가하나, 보행동선은 기존 시설물과의 연계 등에 따른 추가 제안이 가능합니다.	

22	“I” 건축사사무소
【질의내용】 ○ 현상설계질의 목구조 연결부품의 경우 국내생산이 안될경우 수입재 사용이 허용되는가? 【답변내용】 ○ 연결부품이 국산자재가 없을 경우 수입자재의 사용이 가능하나, 전체 주요구조부의 50%이상을 목구조를 적용하여야 하며, 전체 목재 사용량의 50%이상을 국산목재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질의내용】

- 공모지침서 p.22

“건폐율 및 용적률 제한없음”의 정확한 의미는 무엇인지, 대상지는 보존녹지지역으로 법적 건폐율의 한계가 존재합니다. 대지면적을 실사용 대지면적이 아니라, 공원면적으로 산정하여 건폐율의 여유가 있다는 의미인지

【답변내용】

- 관련 법령에 따라 건폐율 및 용적률은 전체 공원면적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별도의 제한이 없습니다.

【질의내용】

- 공모지침서 p.24

“차량 동선은 대상지 서측 황톳길을 이용한다.”

기존 황톳길은 현황 그대로 유지하는 것인지, 현행을 유지한다면 차량의 진입이 불가해보임.

【답변내용】

- 황톳길을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공사할 예정이므로 4M 진입도로로 가정하여 계획하여야 합니다.

【질의내용】

- 공모지침서 p.25, p.27

“대상지 내 장애인 주차구역 1면 및 관리 차량 주차구역 1면 이상 확보”
나. 배치.동선계획 10) 주차는 공원 남측 기존 공원주차장과의
연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되에서 대상지 내 주차 면수는 2대만
확보하고, 법적 주차장은 “오륙도 해맞이공원 스카이워크 공영
주차장”을 이용해 법적주차는 필요없다는 의미인지 또한 관리차
량의 유형 및 크기 등 제원 요청드립니다.

【답변내용】

- 법정 주차대수는 공원 내 기존 주차장으로 충족되므로 실사용 대지
내 장애인 주차구역 1면, 관리차량 주차구역 1면 이상을 확보하면
됩니다.
- 관리차량의 제원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확장형 주차구획
크기로 계획하시면 됩니다.

【질의내용】

- 공모지침서 p.27

“설계지침 일반사항 10) 항목에서 이기대공원 조성계획 상의 미개설 산책로의 선형은 변경 가능하다” 하였으므로, 정확한 미개설 산책로를 도면에 명기한 제공자료 요청드립니다.

【답변내용】

- 실사용 대지를 관통하는 산책로 40번은 삭제, 이동 또는 선형변경이 가능하며, 해당 산책로의 위치는 별도제공자료 다. 이기대공원 조성계획도(예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 제공된 서식자료 건축개요의 건폐율 및 용적률 산정시 대지면적을 공원면적 1,312,701㎡으로 산정하는지, 실사용 대지면적 4,100㎡으로 산정하는지, 공원면적으로 산정한다면, 공원내 시설면적에 대한 자료 제공요청드립니다

【답변내용】

- 건축개요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공원면적 1,312,701㎡로 산정하고, 기존 시설면적을 제외한 목조전망대의 면적만을 기준으로 산정하시기 바랍니다.

28

“N” 건축사사무소

【질의내용】

- 전망대 대상지 위치가 오류도 아트센터계획부지와 바로 인접해 연계가 필요해 보이므로 계획안 자료 요청드립니다.

【답변내용】

- 현재 오류도 아트센터와 관련한 별도의 계획이 없습니다.

29

“A” 건축사사무소

【질의내용】

- P.24 연결통로, 브릿지, 필로티 등 면적 산입 여부

【답변내용】

- 바닥면적은 「건축법」에 따라 산정합니다.

【질의내용】

○ P.9 나. 설계설명서

현장사진, 드론사진 사용 가능 여부 + 사이트 관련 이미지 제공 여부
모형이미지, 드로잉 이미지 첨부 가능 여부

재질 표현 가능 여부 (조감도, 실내투시도 등)

실내투시도 작성 시 가구, 사람 등 가능 여부

설계설명서의 구성은 지침서를 참고하여 순서는 자유롭게 해도 되는지?

제안서 여백, 글자 등 규격 자율 여부

【답변내용】

- 지침서 ‘3. 제출도서 및 작성요령’에서 명시한 내용 이외의 부분은 설계자의 의도에 따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별첨 제1호에 제시된 항목의 순서는 준수하되, 그 외의 페이지 순서 및 구성은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질의내용】

- P.26 가. 일반사항 11)기존에 있는 수목 및 조경 등 일부 조경, 식재 계획에 대한 제안이 가능한지?(보존해야할 식재가 있는지?)

【답변내용】

- 보존수목은 없으나 수목 등의 불필요한 훼손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실사용 대지 내 조경을 계획하여야 합니다.

【질의내용】

- P.24 설계자의 계획에 따라 프로그램 추가 및 변경 가능 여부
기타_이기대공원의 평균 이용객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공 여부

【답변내용】

- 이기대공원의 평균 이용객 현황에 관한 자료는 없으며, 설계자의 의도에 따라 목조체험장 및 다목적 프로그램실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등 관계법령에 적합한 용도에 한하여 타용도 제안가능합니다.

【질의내용】

- P.2 표고 81M의 의미가 제공된 등고높이, 81m까지가 높이한계인 건지 명확한 의미 확인요청

【답변내용】

- 별도 제공자료 바. 이기대공원 현황평면도 상 기재된 표고높이 기준으로 81M입니다.

34

“A” 건축사사무소

【질의내용】

- 기타_ 차량동선 관련 문의) 차량동선으로 활용 예정인 황토길이 폭 2m인바, 확폭예정인지?

【답변내용】

- 황토길을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공사할 예정이므로 4M 진입도로로 가정하여 계획하여야 합니다.

35

“A” 건축사사무소

【질의내용】

- 차량동선을 대상지 서측 황토길을 이용한다(지침서P23)면 기존 황토길은 철거하는 것인지?
공모개요의 높이제한 표고81m이하(지침서P2)라고 하는것이 높이 산정에서 제외되는 승강기탑·계단탑·옥탑 등을 포함한 모든 시설물의 최고점을 의미하는 것인지?

【답변내용】

-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공사예정이므로 4M 진입도로로 가정하여 계획하여야 합니다.
- 제출안은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를 기준으로 표고 81.00m 이하가 되도록 계획하여야 합니다. (건축법에서 높이에 산입하지 않는 부분은 제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침에 따라 인접 아파트와의 시각적 간섭을 최소화하고, 건축물의 위치 및 높이 계획을 통해 프라이버시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질의내용】

- 사업부지 위쪽의 부산 오류도 아트센터 부지 및 추가되는 보행로 계획안을 목조전망대 계획시 반영해야 하는지요? 부산 오류도 아트센터의 차량진입로가 정해져 있다면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답변내용】

- 현재 오류도 아트센터와 관련한 별도의 계획은 없으며, 미개설 산책로(40번)는 설계자의 의도에 따라 실사용대지 및 그 외 공원의 범위까지 삭제, 이동 또는 선형변경이 가능합니다.

【질의내용】

- 본 사업부지에 차량2대를 설치해야하는데, 차량진입로가 지침서 23페이지에 언급되는 황토길을 차량진입로로 보면 되나요? 향후 황토길을 4m 이상 확폭하여 도로로 개설된다고 보고, 목조전망대 계획을 하면 되나요?

【답변내용】

- 황토길을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공사할 예정이므로 4M 진입 도로로 가정하여 계획하여야 합니다.

【질의내용】

- 해당부지에 주차대수는 해당 연면적 대비 주차대수를 고려하지 않고, 주차면수 2대 이상만 설치하면 지침을 만족하는 건가요? 연계하라는 공원 남측 주차장은 오류도 스카이워크 공영주차장을 말하는 건가요?

【답변내용】

- 법정 주차대수는 공원 내 기존 주차장으로 충족되므로 실사용 대지 내 장애인 주차구역 1면, 관리차량 주차구역 1면 이상을 확보하면 됩니다.
- 공원 남측 주차장은 오류도 스카이워크 공영주차장을 의미합니다.

【질의내용】

- 3D이미지(5컷 이내) 사용 시 해당 페이지를 지침서 P.9 작성요령 3.2.7)에 따른 조감도 또는 투시도 설명에 따라 페이지 전체 해당 이미지로만 채워서 사용해야하는 것인지 다른 설명(다이어그램 등)은 사용이 불가능한지 확인바랍니다.

【답변내용】

- 지침서 ‘3. 제출도서 및 작성요령’에서 명시한 대로 ‘조감도 또는 투시도는 각 도면당 설계설명서 한 페이지 전면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가적으로 다른 설명 등은 가능합니다.
- 다만, 지침서 내 ‘랜더링 제한기준’에 따라 건축물의 표현을 왜곡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표현기법은 제한됩니다.

40

“G” 건축사사무소

【질의내용】

- 제출도서 목록에 구적도 dwg cad파일 양식(시트 등)이 따로 있는 확인바랍니다. 렌더링 제한기준이 포토샵 등의 편집 프로그램 사용도 일체를 금하는 것인지 질의드립니다

【답변내용】

- 별도의 구적도 양식은 없으나, 연면적, 건축면적, 실별 면적 등 확인이 용이할 수 있도록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침서 ‘3. 제출도서 및 작성요령’ ‘※렌더링 제한기준’에서 편집 프로그램에 대한 제한은 별도로 없습니다. 렌더링에 대한 판단은 제출된 이미지로 이루어집니다.

41

“G” 건축사사무소

【질의내용】

- 공용공간 면적계산 시 장애인용 승강기를 포함해야하는지 확인 바랍니다(장애인용 승강기는 건축면적/연면적 산정제외 사항임)

【답변내용】

- 바닥면적은 「건축법」에 따라 산정합니다.

42

“G” 건축사사무소

【질의내용】

- 건축물 주요 시설개요 상 목조 체험장 및 다목적 프로그램실은 타용도로 제안이 가능한데, 별도의 타용도 제안은 문화 및 집회 시설의 용도 내에서만 가능한 것인지 확인바랍니다.

【답변내용】

- 주요 시설 중 타용도 제안가능 시설은 설계자의 의도에 따라 새로운 프로그램 시설로 제안가능하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등 관계법령에 적합한 용도에 한하여 제안가능합니다.

43

“G” 건축사사무소

【질의내용】

- 사업부지까지의 차량진입로에 대한 추가자료(도로폭 및 포장 등)를 요청드립니다. 또한 부설주차장 주차대수 확보와 관련하여 주차대수는 기존 주차장(오륙도해맞이공원스카이워크공영주차장)을 활용하는 것인지 확인바랍니다.

【답변내용】

- 법정 주차대수는 공원 내 기존 주차장으로 충족되므로 실사용 대지 내 장애인 주차구역 1면, 관리차량 주차구역 1면 이상을 확보하면 됩니다.

44

“G” 건축사사무소

【질의내용】

- 사업부지 내 주차는 2대(장애인 및 관리차량 주차)만 고려하면 되는 것인지 / 최대주차 또는 법정주차 대수를 고려해야하는 것인지 확인바랍니다.

【답변내용】

- 법정 주차대수는 공원 내 기존 주차장으로 충족되므로 실사용 대지 내 장애인 주차구역 1면, 관리차량 주차구역 1면 이상을 확보하면 됩니다.

45

“G” 건축사사무소

【질의내용】

- 사업부지 인근 오륙도 아트센터 관련 사전기획용역 보고서 등의 자료 제공이 가능한지 확인바랍니다.

【답변내용】

- 현재 오륙도 아트센터와 관련한 별도의 계획이 없습니다.

【질의내용】

- 설계설명서 작성 시 별첨 제1호에 제시된 항목의 순서 및 페이지 구성을 그대로 준수하여야 하는지, 또는 필수 기재사항을 모두 포함하는 범위 내에서 응모자가 페이지 순서 및 구성을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답변내용】

- 지침서 ‘3. 제출도서 및 작성요령’에서 명시한 내용 이외의 부분은 설계자의 의도에 따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별첨 제1호에 제시된 항목의 순서는 준수하되, 그 외의 페이지 순서 및 구성은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질의내용】

- 별첨 제1호 「설계설명서 서식자료」의 유의사항에는 「6. 계획 개념 및 분야별 설계주안점」에 대하여 쪽수 및 서식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해당 항목은 A3 페이지 내에서 도면, 다이어그램, 이미지, 설명문 등을 활용하여 페이지 레이아웃 및 구성을 응모자가 자유롭게 편집하여 작성할 수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답변내용】

- 지침서 ‘3. 제출도서 및 작성요령’에서 명시한 내용 이외의 부분은 설계자의 의도에 따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별첨 제1호에 제시된 항목의 순서는 준수하되, 그 외의 페이지 순서 및 구성은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48

“G” 건축사사무소

【질의내용】

- 설계개요 작성 시 대지면적은 공원면적을 기준으로 하는지 확인바랍니다.

【답변내용】

- 공원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49

“G” 건축사사무소

【질의내용】

- P.24 주요시설개요 상으로 전시장의 수장고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전시장 운영시에 별도의 수장고 공간에 대한 필요여부를 확인바랍니다.

【답변내용】

- 별도의 수장고 공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50

“G” 건축사사무소

【질의내용】

- P.21 위치도에 보라색으로 표시된 차량동선 중 이기대자연마당을 통해 사업부지까지 연결된 차량동선이 있습니다. 해당 차량동선을 비상시 차량동선으로 사용이 가능한지 확인바랍니다.

【답변내용】

- 황토길을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공사할 예정이므로 4M 진입도로로 가정하고, 해당 차량 동선을 비상 시 차량동선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계획하여야 합니다.

51

“G” 건축사사무소

【질의내용】

- 사업규모 상 건축물의 높이가 표고 81M 이하로 제한되어있는데, 신축 목조전시장의 옥탑 및 옥상구조물 등도 81M 이하로 계획 되어야하는지에 대한 자세한 가이드라인을 설정부탁드립니다.

【답변내용】

- 제출안은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를 기준으로 표고 81.00m 이하가 되도록 계획하여야 합니다. (건축법에서 높이에 산입하지 않는 부분은 제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침에 따라 인접 아파트와의 시각적 간섭을 최소화하고, 건축물의 위치 및 높이 계획을 통해 프라이버시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52

“S” 건축사사무소

【질의내용】

- 별첨제6호-수목현황도
부지내 74레벨에 있는 대나무숲 및 소나무 철거 가능한지 질의드립니다
지침서 9p-주요구조부의 50% 이상을 목구조로 적용하라고 명기되어 있는데 산정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질의 드립니다

【답변내용】

- 실사용 대지 내 보존수목은 없으며, 주요구조부의 기준은 「건축법」 제2조 제1항 7호에 따르며, 주요구조부의 50%에 대한 기준은 체적(m^3)으로 판단합니다.

【질의내용】

○ 높이 관련

표고 81m의 기준점은 어디를 입니까? 다운로드 자료에 있다면 파일명 명시 부탁드립니다.

건물의 최고 높이는 어디까지를 기준으로 합니까?

건축물의 최고 높이 관련 법규(자치법규 포함)가 있다면 제공 부탁드립니다.

【답변내용】

- 표고의 확인은 별도제공자료 바. 이기대공원 현황평면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안은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를 기준으로 표고 81.00m 이하가 되도록 계획하여야 합니다. (건축법에서 높이에 산입하지 않는 부분은 제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침에 따라 인접 아파트와의 시각적 간섭을 최소화하고, 건축물의 위치 및 높이 계획을 통해 프라이버시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 표고높이(표고, 標高)는 바다의 면(해수면)이나 어떤 기준 지점을 정해 그 지점에서 수직으로 잰 지형의 높이를 뜻합니다. 즉 지표면의 높이를 ‘해발’처럼 기준면(평균해수면 등)에 대한 수직 거리로 나타낸 값입니다.

54

“R” 건축사사무소

【질의내용】

○ 등고선 관련

다운로드 자료 중 등고선은 5m(이기대 전체), 1m(사업대지 부분)가 있는데, 이기대 공원 전체가 1m 등고선으로 된 도면을 제공해줄 수 있습니까?

【답변내용】

○ 요청자료는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55

“S” 건축사사무소

【질의내용】

○ 층수 및 지하층 계획 관련

설계지침에는 건축예정 규모가 ‘지상 4층 이하(층수 변경 가능)’로 명시됨. 이에 지하층을 별도로 계획하고 지상부를 최대 4개 층으로 구성하는 계획(B1+4F 등)이 가능한지 확인 요청드립니다.

또한 지하층을 계획하는 경우 해당 지하층의 면적은 제시된 연면적 1,200㎡(±5%)에 포함하여 산정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내용】

○ 지하층도 계획가능하며, 지하층의 바닥면적도 연면적에 포함됩니다.

【질의내용】

○ 주요구조부 목구조 기준

주요구조부에 국산 구조용 집성재 외 CLT 등 기타 공학목재 또는 목구조 시스템을 적용하는 것도 가능한지 함께 확인 요청드립니다.

【답변내용】

○ 구조용 집성판(CLT) 등 기타 목구조재도 적용 가능합니다.

【질의내용】

○ 주차계획 및 차량 접근 기준

설계지침에서는 주차계획 시 남측 기존 공원주차장과의 연계를 우선 고려하고, 대상지 내부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1면 및 관리차량 주차구역 1면 이상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시설에서 요구되는 법정 부설주차 대수는 기존 공원주차장을 활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지, 공모안에서는 실사용대지 내 장애인주차 1면 및 관리차량주차 1면 이상만 계획하면 되는지 확인 요청드립니다.

또한 차량동선으로 제시된 서측 황토길을 관리차량 및 소방차량의 진입동선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차량통행을 위해 기존 황토길의 폭원·포장·선형 등을 변경하거나 보완하는 계획이 가능한 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내용】

○ 법정 주차대수는 공원 내 기존 주차장으로 충족되므로 실사용 대지 내 장애인 주차구역 1면, 관리차량 주차구역 1면 이상을 확보하면 됩니다.

○ 황토길을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공사할 예정이므로 4M 진입도로로 가정하고, 해당 차량 동선을 비상 시 차량동선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계획하여야 합니다.

【질의내용】

- 조감도·투시도 5컷 제한의 적용 범위
평면도·단면도·구조계획 등에 부속하여 건축적 개념이나 공간구성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하는 라인드로잉 방식의 3차원 다이어그램, Axonometric 또는 설명용 투시도 역시 5컷에 포함되는지 확인 요청드립니다.

【답변내용】

- 지침서의 ‘렌더링 제한기준’에 따라, 부가적인 표현은 도면 및 문자로는 설명이 부족한 경우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도표, 스케치, 다이어그램, 설명을 목적으로 하는 라인드로잉 기반 투시도를 의미하며 도면 등에 부속적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부가적인 표현의 경우는 조감도 또는 투시도(실내포함) 5컷에 포함되지 않습니다.